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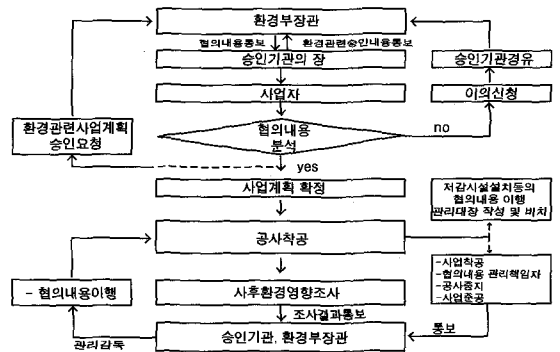
김임순*, 이춘원**, 전숙진*, 최원욱*, 한상욱*
아태환경·경영연구원*
동성엔지니어링**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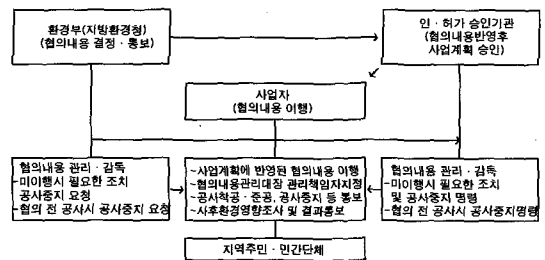
머릿말

- 가.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개념
- 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의의 및 과정
- 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현황
 - 1) 우리나라 사후관리제도의 개요
 - 2) 사후관리 관련법령 및 규정
 - 3) 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 4) 사후환경조사계획 작성방법
- 라.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요
 - 1) 일본
 - 2) 미국
 - 3) 캐나다
 - 4) 기타 국가
 - 5) 외국제도 분석결과
- 마.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개선방안
 - 1) 개요
 - 2) 사후관리의 부문별 개선방안
 - 3) 사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

맺음말



〈그림 7〉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상 사후관리 절차도



〈표 8〉 사후관리 주체별 의무사항 및 업무체계도



라.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요

1) 일본의 제도

(1) 일본제도의 개요

각의 환경영향평가(1984년 각의 결정 요강)에서는 사업 착수후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등에서는 예측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보아 예기할 수 없었던 영향을 도출하여, 필요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공사중이나 공사후의 환경 상태, 환경으로의 부하, 사업이나 그 환경보전대책의 실시상황을 조사하는 사후조사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2) 사후관리 관련 주요 제도

① 국가의 제도 및 사후조사매뉴얼

1997년 6월 13일 공포된 일본의 환경평가법 제38조(사업자의 환경의 보전의 배려 등)에서는 “사업자는 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환경보전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여 당해 대상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 보전에 관한 심사를 행하는 자가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를 행하는 자는 당해 심사에 관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원을 사업의 실시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있는 바, 이는 환경보전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사료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예측 정밀도를 높

이고, 보다 적절한 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사업착수 후 환경상황 등의 모니터링(사후조사)의 정의나 방법 등에 대한 사고를 명확히 하고 사후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환경청이 사업자에 대하여 실시를 요구해왔던 재평가(리뷰)에 관하여도, 그 방법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事後調査・再評價(レビュー)に関する検討會(사후조사·재평가(리뷰) 관련 검토회)】를 조직하였고, 사후조사와 재평가의 정의와 방법을 정리하여 1998년 3월【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 재평가(리뷰) 매뉴얼】을 발간하였는 바, 본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문을 소개하였다. (표 6 참조)

〈표 6〉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재평가 매뉴얼 구성내용

1. [사후조사·재평가(리뷰)관련 검토회] 개요
2. 사후조사, 재평가(리뷰)의 기본적인 사고
2.1 사후조사·재평가 정의
2.2 제3자 기관 등의 관여에 관하여
2.3 조사결과와 공표관련 기본적 사고방식
2.4 사후조사 방법 사고방식
2.4.1 사후조사 계획의 책정에 해당하는 사고방식
2.4.1.1 실시주체의 사고방식
2.4.1.2 계획확정시 기본적 사고방식
2.4.1.3 조사항목 선정의 사고방식
2.4.1.4 조사방법 선정의 사고방식
2.4.1.5 조사범위, 측정지점 설정의 사고방식
2.4.1.6 실시시기, 조사기간 설정의 사고방식
2.4.2 사후조사에서 예측외의 사태발생시 대처방안에 관하여
2.4.3 사후조사·재평가(리뷰)를 위하여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2.4.3.1 현황조사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
2.4.3.2 예측·평가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
2.5 재평가(리뷰) 방법의 사고방식
2.5.1 재평가(리뷰) 방법선정, 실시에 해당하는 사고방식
2.5.1.1 재평가(리뷰)의 실시주체
2.5.1.2 재평가(리뷰)의 실시시기
2.5.1.3 재평가(리뷰) 방법
2.5.2 재평가(리뷰) 결과에 근거한 적절한 환경보전 조치의 사고방식
2.5.3 재평가(리뷰) 결과에 근거한 예측·평가 기술의 검토



② 사후조사매뉴얼의 주요내용

㉞ 사후조사·재평가(리뷰)관련 검토회 개요

통합평가법에 관련한 기본적사항(平成9년 환경청고시 제 87호) [환경영향평가 선정항목과 관련되어 예측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저감효과에 관련된 지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환경보전 조치를 강구했던 경우에 환경영향의 중대성에 따라 공사시 및 운영시의 환경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대응으로 사후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나 사업자가 자체체 등과 체결하는 환경보전협정(공해방지협정)에 근거한 사후조사(감시)가 실시되고 있지만, 사후조사의 내용은 사업종류와 각 사업마다 각양각색으로서 그 방법이 통일되지 않고 있으며, 예측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 또는 예측의 전제 조건 설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 환경청장관 의견에서 예측·평가 내용이 타당한지, 강구했던 환경보전 조치가 적절한지 등을 요구하는 사례나 방법 등의 사고방식이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후조사 및 재평가의 정의나 그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후조사·재평가(리뷰)관련 검토회]를 조직하였다.

㉟ 사후조사·재평가의 정의

[사후조사]란, 해당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선정된 항목과 평가를 실시한 항목중 예측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또는 저감효과에 관련된 지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환경보전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사업자가 공사중 및 운영시의 환경상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말한다. 또한, 사후조사 결과에서 대상사업에 기인한 환경영향이 밝혀졌던 경우의 대응의 방침을 사업자가 미리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평가(리뷰)]란, 예측의 불확실성이 큰 사업 등에 관하여, 사업 진척단계에 따라 새로이 조사된 사후조사결과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 재예측을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 예측·평가 결과가 타당한지, 평가항목 선정에서 예측·평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적절하였는지, 또는 강구했던 환경보전 조치가 적절 또는 충분하였는지에 관하여 사업자가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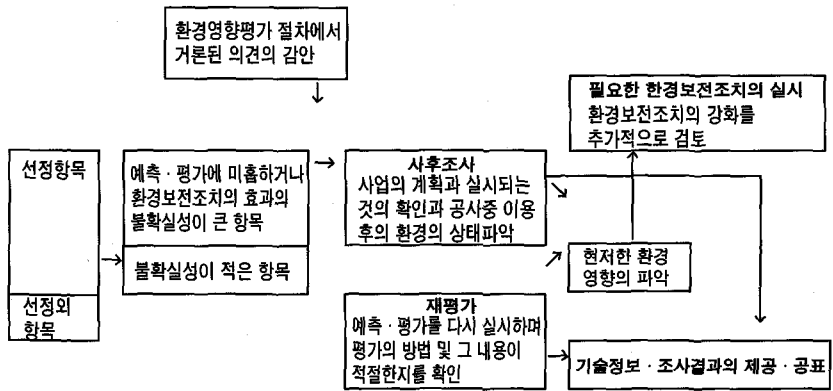
필요한 환경보전조치의 실시
환경보전조치의 강화를
추가적으로 검토

사후조사
사업의 계획과 실시되는
것의 확인과 공사중 이용
후의 환경의 상태파악

재평가
예측·평가를 다시 실시하며
평가의 방법 및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

현재한 환경
영향의 파악

기술정보·조사결과외 제공·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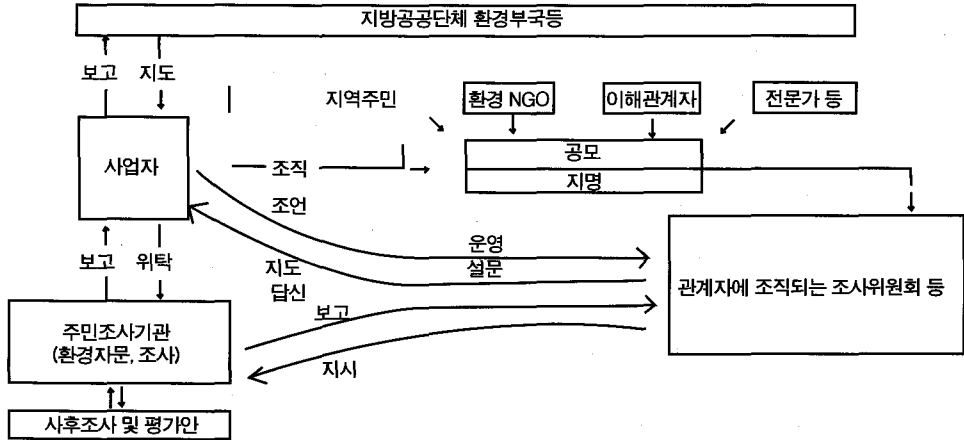
〈그림 9〉 사후 조사에서 재평가에 이르는 과정

㊱ 제3자 기관 등의 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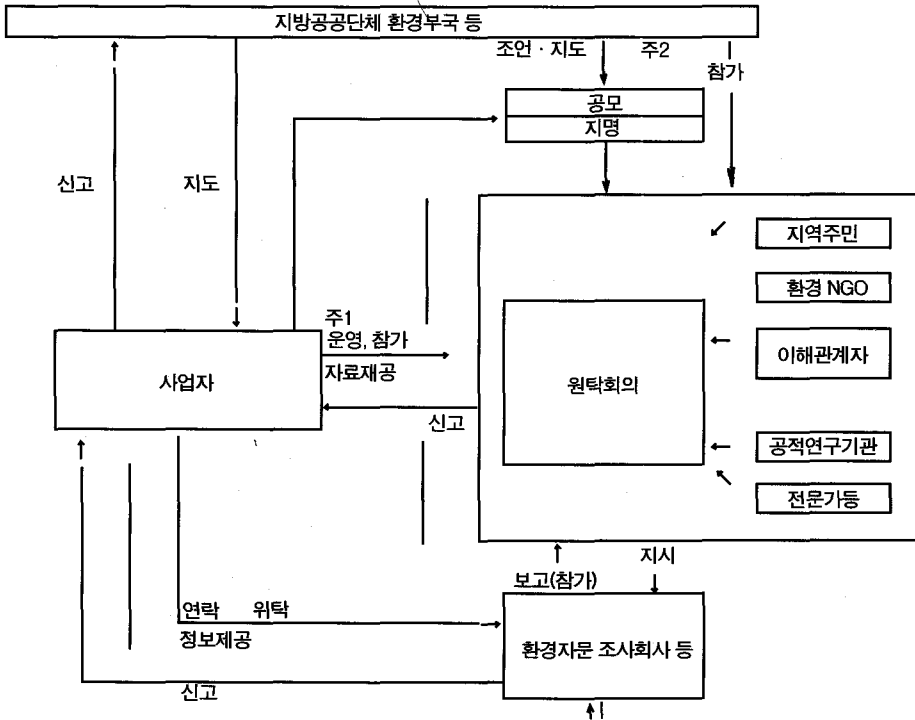
사후조사, 재평가의 적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는 지방공공단체 환경부국 등과 협의하는 동시에, 전문가 등이 구성되어 있는 제3자 기관 등의 조언·지도를 받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조사위원회 등을 조직하며 사후조사·지평가의 검토를 행하는 형태



(2) 원탁회의를 조직하여 사후조사, 재평가의 검토를 행하는 형태



- 주1) 사업자사 비용을 부담하여 원탁회의의 운영을 하는 것
- 주2) 지방공공단체가 원탁회의의 구성원의 인선을 사업자에 조언·지도를 하는 것

〈그림 10〉 제3자 기관 등의 관여에 대한 사고방식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제3자 기관 등을 조직하지만, 사업자 및 지방공공단체 등에서 독립한 중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 그 조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배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업자는 제3자 기관 등의 조직에 대하여 지방공공단체 환경부국 등의 조언·지도를 받아야 함

- 그 업무로서 사후조사·재평가의 작업에 관계하고 기술적·종합적인 협의를 하는 동시에, 협의내용 등에 관한 설명책임은 짐.

- 구성원으로서 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조사기관(환경컨설턴트), 환경NGO 등의 연구자 등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고, 주민 등으로 지역의 문화·자연환경 등에 관하여 지식이나 관심을 갖는 사람의 관여에 대하여도 고려할 것.

보다 적절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사업자는 넓은 이해 관계자의 관여 아래 협의를 하는 것이나, 방법서의 검토 단계에서 제3자 기관 등을 조직하는 등의 방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㉞ 조사결과의 공표

사후조사 및 재평가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업자가 공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공표의 대상은 조사결과, 재평가 결과, 환경보전 조치의 효과 등에 관한 일련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단지, 희소 생물의 서식·생육에 관계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필요에 따라 공개하고, 종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정리하는 등의 생물 보호상의 배려가 행하여질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보고서의 열람, 팸플릿(개요 보고서)의 배포, 도·부·현 등에서 매년 발행하는 환경백서, 기업이 발행하는 환경 리포트에의 기재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하여 조사결과 등을 공표하는 동시에 공표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전자매체에 의하고 보관하고,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주민

등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즈음하여 다른 사업자의 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했던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후조사, 재평가에 관련되는 기술 정보에 관하여는 적절한 형식으로 공표되는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향상을 위해 정보의 축적이 꾀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㉞ 사후조사방법

사후조사 실시주체는 해당 사업의 사업자인 것을 기본으로 하며, 양도 등에 의하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후조사가 계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양도계약 등에 의하여 사업을 이어받는 사람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 계획은 사업자가 책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사후조사의 적정·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공단체 환경부국 및 제3자기관등의 조언·지도 아래에서 계획·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사업자는 담당 부국과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사계획은 조사내용, 조사 데이터의 해석 방법, 조사결과 반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며, 조사 및 예측의 기술적 한계, 예측이 전제로 했던 조건 추이의 불투명함, 환경보전 조치의 효과에 관련되어 지식의 불충분함 등, 조사·예측·평가·대책 조치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큰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진술했던 의견 등을 배려하여 조사항목을 선정한다.

또한, 환경 보전 조치 등의 실시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다면, 예측·평가됐었던 항목에 관하여도, 해당 조치의 실시 상황 및 그 효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상, 수상 등의 예측 조건으로 설정했었던 사항도 동시에 조사하며, 사업자



는 사후조사의 실시에 즈음하여 이러한 사항이 예측 조건과 크게 변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후조사 결과는, 현황조사 결과 및 예측평가 내용과 비교 대조가 가능한 것이 제 1조건이듯이, 일반적으로는 사후조사의 방법은 현황조사의 방법에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 단지, 평가시점에서 불확실했던 조사방법이 현재는 사용 가능해진 경우라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의 채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㉞ 조사범위, 측정지점의 설정

사후조사의 조사 범위, 측정지점 배치, 현황조사 범위와

여는, 대상 연차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예측연차에 이르는 기간이 장기간에 미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중 연차 기간이라도 필요에 따라 사후조사를 실시할 것.

단기간 또는 단연도의 조사로서 대상항목에 관련되는 환경의 상태가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해에 걸치는 조사의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식물, 생태계에 관하여는 년 변동도가 큰 것부터 그 상태의 파악이 가능한 조사기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영시의 사업활동이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환경상태가 예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었던 항목에 관하여는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7〉 조사범위 및 조사측점

조사범위	조사측점	양식 예	사유
현황조사와 동일	변경	현황조사와 동일	
		보완 측정지점을 마련	공간적 불균질성이 큼
		현황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삭감	공간적 불균질성이 작음
축계 변경	변경	공간적으로는 감소, 시간밀도는 증가	시간적 불균질성이 큼
축계 변경	변경	영향설정 범위에서 엄선	영향범위가 한정적이므로 합리적으로 예측됨
축계 변경	변경	보다 광역의 조사를 포함	영향설정 범위외로의 변화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평가 곤란 ; 예를 들면 철새 등

※ 이 밖에 공간적, 시간적 측정지점을 충실하게 하는 등이 다양한 패턴이 설정된다.

측정지점 및 예측 평가범위를 기본으로 설정한다(표7참조).

영향 파악 및 불확실성 최소화 관점에서 필요시 조사범위를 확대(또는 집중)하거나, 측정지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고치는 것으로서 그 영향이 광역에 미치는 사항이거나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채택할 것.

㉟ 실시시기, 조사기간의 설정

예측대상 연차를 정하고 예측·평가를 했던 항목에 관하

㊱ 예측 외의 사태발생 대처방안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현저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 사업자는 즉시 지방공공단체 환경부국이나 제3자 기관 등에 연락하는 동시에 적절한 대응책 도모해야 한다.

㊲ 사후조사, 재평가(리뷰)를 위하여 현장 조사, 예측 및 평가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사후조사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현황조사 및 예측·평가의 단계에서 사후조사·재평가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책정하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에 따르는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연변동에 의한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황조사에 있어서 사업 실시구역과 주변지역 별로 사전의 백그라운드 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항목의 예측·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의 경우에 근거하



여 예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후조사는 이것들이 다양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업이 장기에 미치는 경우에는 예측 연차의 도중에 있어서 사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에서 도중 연차에 관하여도 적절한 예측·평가를 하고, 예측·평가 내용에 관하여는 사후조사 결과와 대비 가능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㉔ 재평가방법

재평가의 실시 주체는 해당 사업의 사업자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재평가의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사업자는 사후조사와 같이 지방공공단체 환경부국 및 제3자 기관 등의 조언·지도 아래에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평가는 환경청장관 의견 등으로 제안된 시기, 재평가에 필요한 데이터가 얻을 수 있는 시기 등에 매우 급하게 실시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의 결과를 환경보전 조치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 사업의 공정단계(공사중, 공용후<존재·이용>)나 환경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측·평가의 전제 조건 등이 사업의 진척단계(공사중, 공용후<존재·이용>)에 따라 밝혀졌던 조건 등에 근거한 재예측(재현계산)을 실시하는 것과 재예측의 실시에 즈음하여 예측·평가로 이용했던 방법보다도 또한 불확실성의 저감이 가능한 예측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하여 재예측을 하는 것으로 실시했었던 재예측 결과와 사후조사 결과 및 평가서의 예측·평가 내용과의 비교 검토를 하고 예측 내용이 실제의 상황과 크게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예측·평가 내용 타당성의 검증결과 예측범위를 초과하는 환경영향이 밝혀졌던 경우에는 적절한 환경보전 조치(조치의 강화·추가 등)를 하고, 조치 후의 환경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후조사를 하는 것. 적어도 평가서에 있어서 예측·평가했었던 정도까지 영향이 저감되고 있는 것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예측의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현저한 환경영향이 나타나는 경우에 사업자는 지방공공단체 환경부국 및 제3자 기관 등과 연락·협의하고, 환경보전 조치의 강화 등의 대응을 도모하여야 한다.

사후조사 결과와 예측내용이 정합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재평가에 의한 예측·평가 방법 또는 예측·평가의 프로세스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 및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정리하는 것, 선진방법에 의한 예측, 재예측을 했던 경우, 또는 효과에 관련되는 식권이 불충분한 환경보전 조치를 강구했던 경우에는, 예측결과와 조사결과와의 비교 검토내용, 해당방법에 관련된 기술적 과제, 또는 조치의 효과 등을 정리하는 것, 재예측에 의한 예측이 보다 확실한 내용이 됐던 경우에는, 예측 방법의 기술적인 개선점 등을 밝히는 것 등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관련된 기술적 향상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사업자는 상기의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

(3) 동경도의 사후조사 절차

① 개요

동경도의 경우 사후조사절차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조례(소화 55년 10월 20일)를 제정한 바 동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영향평가절차, 제 3 장 사후조사의 절차, 제 4 장 동경도 환경영향평가 심의회, 제 5 장 잡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조례의 제3장 사후조사의 절차에서 제30조(사후조사계획서의 제출 등), 제31조(착공의 제출 등), 제32조(사후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제33조(공사완료 등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중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경도는 소화 57년 6월 1일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 기준을 고시하였다.

제3장 사후조사의 절차

제30조(사후조사계획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예측 및 평가항목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후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의 제출시 함께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사는 지체없이 사후조사계획서 사본을 관계 구시정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후조사계획서는 지사가 사후조사의 항목, 방법, 범위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하는 기준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제31조(공사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에 관계되는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대상사업의 명칭, 공사착공의 예정년월일, 공사완료예정년월일,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지사는 제출된 내용을 지체없이 공사하고 관계 구·시·정·촌장에게 통지한다.

제32조(사후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에 관계되는 공사에 착수한 후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후조사계획서에 따라 사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사후조사보고서 및 그 개요를 작성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후조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지체없이 당해 사후조사보고서의 개요를 공시하고 당해 사후조사보고서 등의 사본을 관계 구·시·정·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조사보고서 등의 제출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해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해당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당해대상사업에 관계되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거나 줄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규제 기타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3조(공사완료등의 제출)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에 관계되는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또는 당해공사를 중지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제출에 있어서 준용한다.

② 동경도의 환경영향평가사후조사기준

동경도 환경영향평가사후조사기준(소화 57년 6월 1일 고시 제598호)은 총 3개의 장으로서 제1장은 총론, 제2장은 각론, 제3장은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동경도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 기준이다.

동경도 환경영향평가사후조사기준
(소화 57년 6월 1일 고시 제598호)

제 1 장 총론

I. 사후조사의 취지 등

1. 취지

동경도환경영향평가사후조사기준(이하(사후조사기준)이라 한다)은 동경도환경영향평가조례(1980년 동경도조례 제96호, 이하 (조례)라 한다)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후조사가 과학적으로 적절하게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적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모든 대상사업에 공통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2. 용어

이 사후조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조례 및 동경도환경영향평가기술지침(1981년 동경도고시 제873호, 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에서 사용한 용어의 예에 의한다.

3. 개정

이 사후조사기준은 금융 과학적 지식의 진전 및 환경영향평가와 사후조사실시예가 많아짐에 따라 항상 적절한 과학적 판단을 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II. 사후조사의 실시 등

1. 조사의 실시

사업자는 조례 제32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기재된 예측 및 평가의 항목(이하 {예측평가항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후조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의 시행중 또는 완료후 사업조사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2. 조사의 내용

사후조사는 환경상황을 조사한 환경조사와 더불어 대상사업에 관한 시설 등의 상황 및 배출물질 등의 상황을 조사한 대상사업의 조사로서 대상사업의 조사에 있어서는 환경의 상황과 대상사업의 실시와의 관련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행한다.

3. 조사시기 등

가. 대상사업에 대한 조사는 환경조사와 동일시기에 실시한다.
나. 조사는 예측평가한 항목마다 예측시 설정한 예측대상시점에 행하고 예측시 설정한 기상, 수질상태등의 예측조건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실시한다.

4. 조사결과의 검토

환경조사결과에 대하여는 평가서에 기재된 예측과 비교하여 조사시점에 있어서의 기상상황, 수질상태, 기타사항과의 연관 및 대상사업의 조사결과와의 관련을 검토한다. 대상사업의 조사결과 중 배출물질 등의 상황에 대하여는 조사시점에 있어 배출물질 등의 발생상황과 배출상황과의 비교에 의거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의 비교를 검토한다.

다음호에 계속...